

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139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: 2023. 8. 25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 사항 및 직원 제안 사항 반영 등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 직원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 연가 전환 조항 신설(안 제15조)

나. 연간 3일의 자기계발 휴가 조항 신설(안 제16조제8항)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, 제7조의 7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30159호, 2023. 7. 26.)

라. 입법예고: 2023. 7. 3.~ 7. 24.(21일간) / 의견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존중하여야”를 “존중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준수하여야”를 “준수해야”로 한다.

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)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16조(총전의 제15조)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줄 수 있다.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4조(근무기강의 확립)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<u>존중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<u>준수하여야</u>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| <p>제4조(근무기강의 확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존중해야</u> 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준수해야</u> ----.</p> <p>제15조(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) <u>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u></p> |
| <p>제15조(특별휴가) ① ~ ⑦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 | <p>제16조(특별휴가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<u>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줄 수 있다.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</u></p> |
| <p>제16조 · 제17조 (생략)</p> | <p>제17조 · 제18조 (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)</p> |

근 거 법 규

□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제4조(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1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
2.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

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 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발생이 예상되며, 조례 개정이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3. 작성자

- 소 속: 총무과
- 직 급: 지방행정서기
- 성 명: 박호진
- 연락처: (052)290-3163